

#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

제정 2010. 3. 23. 규칙 제1899호  
개정 2021. 2. 10. 규칙 제2717호  
개정 2022. 2. 24. 규칙 제2813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것은 부산대학교 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대학원장) ① 대학원에 대학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,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 보한다.

② 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.

제4조(부원장) ① 대학원에 부원장을 두며,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부원장은 교원의 인사 및 평가, 학사, 학생교육과 학생지도 등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을 보좌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학과장) ① 대학원에 한의학과와 한의과학과를 두며,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학과장은 학과의 운영을 통할하고 학생의 교육과 지도 및 연구활동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.

제6조(전공교실) ① 한의학과와 한의과학과의 원활한 운영과 학생 교육을 위하여 학문분야별로 [별표]와 같이 전공교실(이하 “교실”이라 한다)을 두며, 한의과학과에는 학문분야별로 세부전공을 둘 수 있다.

② 교실의 신설과 통·폐합은 대학원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③ 교원의 배치와 과목의 담당은 해당교실 주임교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원장이 정한다.

제7조(주임교수) ① 교실에 주임교수 1명을 두며, 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주임교수는 해당 교실의 운영을 통할하고 학생의 교육과 지도 및 연구 활동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.

③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통산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한의학전문대학원 대학원위원회(이하 “대학원위원회”라 한다.)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교실은 예외로 한다.

제8조(회의) ① 대학원에 대학원교수회의, 주임교수회의, 대학원위원회, 교실교수회의 등을 둔다.

② 각 회의는 재적교원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교원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교실교수회의는 재적교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, 대학원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제2항에 의한 재적교원은 휴직, 정직, 파견 및 공무국외여행 중인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대학원교수회의)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교수회의를 두고 의장은 원장이 된다.

② 대학원교수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교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.

③ 대학원교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수,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
2. 대학원 운영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3. 예산에 관한 사항
4. 교수회 평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5. 입학, 수료, 학위수여 및 졸업에 관한 사항
6. 학생의 지도, 장학, 후생 및 상벌에 관한 사항
7. 발전계획 등 중요한 사항
8. 그 밖에 대학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대학원교수회의는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 규정의 개정과 폐지는 의결할 수 없다.

제10조(주임교수회의) ① 주임교수회의는 교실간의 업무조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.

② 주임교수회의는 원장, 학과장과 주임교수로 구성하며 의장은 원장이 된다.

③ 주임교수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임교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
제11조(대학원위원회)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.

② 대학원위원회는 원장과 대학원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③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, 수료 및 학위수여
2. 학과나 전공의 설치·폐지와 학생정원
3. 교육과정
4. 규정의 제정과 개정
5. 그 밖에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**단, 교육과정에 관한 심의는 '교육과정위원회' 지침을 따른다.**

④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12조(교실교수회의) ① 교실에는 「학칙」제32조제1항의 전공교수회의에 해당하는 교실교수회의를 둔다.

② 교실교수회의는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, 소속 전임교원이 5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속 교수회의에 의한 추천과 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교실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

하고, 의장은 해당 교실 주임교수가 된다.

③ 교실교수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 전임교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
④ 교실교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
2. 전임교원, 조교 및 강사 등의 인사
3. 예산
4. 학사운영과 학생지도

⑤ 교실교수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실교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실과 위원회) ① 대학원에는 필요에 따라 한의학교육실, 중앙실험실 및 기타 실이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한의학교육실장과 중앙실험실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

제14조(실의 업무) ① 한의학교육실장은 교육과정의 개선 및 개발, 교수·학습방법, 교육평가방법, 교육매체의 개발 등 한의학교육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, 기타 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.

② 중앙실험실장은 교육 및 연구용 기자재 도입 및 운용, 동물실험실 운영, 기타 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.

제15조(지원 및 부속시설의 설치) ① 대학원에 자체 시설로 원, 과정, 연구소 등 지원 및 부속 시설(이하 '시설'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② 시설에 시설장 1명을 두되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

제16조(연구원과 조교) 학과, 교실, 실 및 시설에 교육, 연구,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연구원이나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17조(규정 및 시행세칙의 개정과 폐지) ① 이 규정의 개정과 폐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주일 이상 공고하고 대학원교수회의에서 의결한다.

② 이 규정에 의한 각 실, 위원회 및 시설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의결한다. 다만, 각 교실의 업무 분장과 연구원 및 조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(규칙 제1899호, 2010. 3. 23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이 규정 시행 전의 조치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제2717호, 2021. 2. 10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2813호, 2022. 2. 2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에 두는 전공교실

분 야	교 실 명
기초의학	인문사회의학교실, 약물의학교실, 응용의학교실, 양생기능의학교실, 경락구조의학교실
임상의학	임상의학1교실 (한방순환신경내과, 한방신경정신과) 임상의학2교실 (한방부인과, 한방소아과, 한방안.이비인후.피부과) 임상의학3교실 (침구의학과, 한방재활의학과) 임상의학4교실 (간계내과, 비계내과, 폐계내과, 신계내과, 사상체질의학과, 동서협진의학)